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제4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43조(과태료)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 정종환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후생”을 “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군의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

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4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제9조의 제목 중 “용도지역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1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한다.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제19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의”를 “도시·군기본계획의”로,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를 “도시·군기본계획에”로, “도시기본계획에”를 “도시·군기본계획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을 “도시·군관리계획을”로,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의”를 “도시·군관리계획의”로,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을 “도시·군관리계획을”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을 “도시·군관리계획을”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장·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광역시장은”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으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지구·지역”을 “지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44조제6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3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으로, “도시계획시설의”를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의”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6조”를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제52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작을 위한”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을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를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을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제2항제3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같은 항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62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5조제3항 본문, 제4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83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에”를 “도시·군계획시설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및 제4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93조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6조제2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9조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1조 중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6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환경”을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도시계획 등”을 “도시·군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을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13조의3 및 제1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6조의 제목“(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를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로 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그 구역”을 “그 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제1항제17호, 제21호라목·바목 및 제2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4조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국가계획”을 “국가계획”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1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⑯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⑱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⑲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㉓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㉖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㉗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㉖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㉗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및 제7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㉘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㉚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㉛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㉓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㉗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㉞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㉟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㊲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㊳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㊵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④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로 한다.

④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④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④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④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⑤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⑤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⑤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⑤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㉖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㉗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㉚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㉛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㉒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㉔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㉕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㉖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⑥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⑥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⑥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⑦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⑦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㉖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㉗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㉘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㉚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㉛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㉜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㉓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희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이 귀 남
법무부장관

●법률 제1060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